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681호
-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 외 11명
- 다. 발의일자 : 2026년 5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K-컬처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국제적 규모의 문화 예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 아울러 국제문화행사 개최 시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치안·안전 관리, 민간 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역량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국가·타 지자체·민간과의 협력 강화, 조직위원회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타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4조).
- 라. 행사장 및 기반시설 제공, 도시경관 조성,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안전·의료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시민 참여 고취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장의 책무, 행정적·재정적 지원,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위임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류 확산과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국제문화행사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갖는 행정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서울특별시는 국제적 접근성, 문화·관광 인프라, 대규모 행사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문화행사 개최 수요가 높은 도시라 할 수 있음.
-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행사 주관기관의 준비뿐만 아니라 행사장·기반시설·교통·안전·의료·민간 참여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에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제정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 민간 참여 활성화 ▲제7조 위임사무의 처리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조제목	주요내용
제1조	목적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지원함
제2조	정의	용어의 뜻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함
제3조	시장의 책무	국제문화행사 지원 시책 수립, 관계기관 협력, 협조 요청 대응 등을 규정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제5조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행사장·기반시설·도시경관·관련시설·안전·의료 등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민간참여 활성화	시민 참여 및 민간단체·지역주민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제7조	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사무 처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함
부칙	시행일	조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9일로 규정함

- 동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체계를 전제로 하여 서울시 차원의 지원사항과 협력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본계획이나 위원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체계를 두기

보다는 국제문화행사의 실제 개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역량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역량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의 목적을 설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라는 표현은 적용대상이 다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사무 범위, 행사와 서울시의 관련성, 관계 법령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는 조례에서 별도의 정의를 두어 상위법상 개념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민간과의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 요청 및 조직위원회의 협조·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제문화행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위원회, 민간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협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임.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책 총괄·조정 및 조직위원회의 준비·운영과 연계하여 서울시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집행력을 서울시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 다만, 제3항 및 제4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에는 서울시의 권한 범위, 관계 법령상 절차,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제문화행사 지원 과정에서는 보조금, 공유재산, 안전관리, 민간 협력 등 다른 조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한 것은 조례 적용상의 혼선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자치법규 입안 체계상 개별 조례와 다른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4)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5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2.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정비 및 관계기관 협조 지원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
5.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6.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지원사항으로는 공연장·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교통·통신·전력·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정비 및 관계기관 협조 지원,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제문화행사 개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대표적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문제가 없어 보임.

(5) 민간 참여 활성화(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이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6조(민간 참여 활성화)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제문화행사는 공공부문의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지역사회 협력, 민간단체 활동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행사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안 제6조**는 국제문화행사의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나, 집행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행사 개최와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위임사무의 처리(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제7조(위임사무의 처리)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는 상위법상 위임사무 처리 체계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 및 행정절차의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국제문화행사는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현장 지원이 함께 필요한 분야이므로, 위임사무 처리 시 사전협의 절차를 두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향후 대통령령에서 위임사무의 범위와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마. 종합의견

-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의 국제문화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인정됨.

- 서울시는 문화예술, 관광, 국제교류,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국제문화 행사 개최 수요가 높은 도시이며, 행사 개최 시 행사장·공간 제공, 기반시설 정비, 도시경관 조성, 안전·의료 서비스 연계, 민간 참여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음.
- 동 제정안은 상위법상 용어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문화행사 지원사항, 민간 참여 활성화, 위임사무 처리 및 시행일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과 내용 간 정합성이 높다고 판단됨.
- 특히 국제문화행사 지원사항을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기반시설·안전·의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어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문화행사”라는 표현은 집행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지원 여부 판단 시 서울시의 사무 범위, 행사와 서울시의 관련성, 관계 법령 및 예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안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활동 지원이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동 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으로 볼 수 있겠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심형준(2180-8116)
------	----------------	-------	----------------